품 의 서

_	
문서번호	품의서20250822-001
작성일자	2025-08-21(목)
신청부서	사업본부
신 청 자	유제욱
직 위	본부장

	본부장	대표이사
결 재)EUC ^K 유제욱	사 김수근
	2025/08/21	2025/08/22

시행일자	2025-09-01(월)
제 목	위임전결 규정 개정의 건

당 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위임전결 규정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1. 목적 : 회사의 업무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, 합리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2. 기대효과

- 1) 명확한 결재 권한 규정을 확립하여 업무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 상승
- 2) 각 직위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

3. 상세 내용

- 1) 개정 위임전결 규정은 [별표 1, 위임전결 기준표]에 따라 적용됨
- 2)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조직에 적용되며, 타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 본 규정을 따름
- 3) 위임전결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
- (1) 해당 업무와 가장 유사한 위임전결 기준을 준용함
- (2) 유사 사례가 없어 판단이 어려울 경우, 직속 상위자의 지시에 따름
- (3) 사안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될 시, 차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함
- (4) 기안 내용이 타 부서 업무와 관련 있을 경우, 결재 상신 전에 해당 부서의 합의 필수
- (5) 결재권자의 부재 시에는 직무대리자가 '대결' 표시와 함께 결재하고 사후 보고함
- (6) 긴급한 사안으로 인한 '후결'은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, 업무 집행 후 사후에 정식 결재 절차를 거침

4. 시행 계획

- 1) 시행일: 2025년 9월 1일부터
- 2) 공지 및 교육 : 개정 규정 내용을 전직원에게 공유 및 교육하여 원활한 업무 적용을 지원
- * 첨부: 위임전결 규정, 규정 권한표(상세)